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1가단50859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박일섭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라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1,659,064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4. 9.부터 2021. 10. 17.까지는 연
7.3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나. 3,378,498원 및 그중 2,853,868원에 대하여 2021.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8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20. 6.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와 2020. 6. 4. 접수 제623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6. 6.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여신한도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를
12,0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 나. 피고 회사는 2014. 10. 28. 원고에게 신용카드 회원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신용카드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다. 피고 회사 및 피고 B이 위와 같은 대출금채무와 신용카드대금 지급채무를 연체하여 2020. 5.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기술보증기금이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20. 10. 26. 원고에게 91,918,748원을 변제하여 2021.
4. 9. 기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순 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총합	이율 (%)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6. 6. 30.	10,000,000	1,659,064	11,659,064	7.31
2	신용카드	2014. 10. 28.	2,853,868	524,630	3,378,498	20.82
합계			12,853,868	2,183,694	15,037,562	-

라. 피고 B은 2006. 4.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는데, 2020. 6. 4. 대전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6230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형인 피고 C에게 2020.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2020. 6. 2.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피고 B 명의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 11,659,064원(= 원금 10,000,000원 + 이자 1,659,064원) 및 그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계산 최종일 다음날인 2021.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1. 10. 17.까지는 약정손해금율인 연 7.3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연대보증 한도인 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원리금 합계 3,378,498원(= 원금 2,853,868 + 이자 524,630원) 및 그중 원금 2,853,868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계산 최종일 다음날인 2021.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손해금율인 연 20.8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6. 2. 이전에 이미 피고 B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 외에도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14,707,000원, F에 대한 454,000원,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194,072,000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고 B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6. 2. 20. D과 피고 B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 C의 아버지인 망 G과 피고 B 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매도인인 D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여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책임재산에 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2006. 2. 20. 이 사건 부동산을

D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망 G과 피고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약 14년간 누구도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등기라거나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이 2006. 2.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망 G과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 매매대금도 망 G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D의 진술만으로는 망 G이 피고 B를 단순히 대리하였거나 망 G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6. 2. 20. 이 사건 부동산을 D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망 G과 피고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익자 피고 C의 악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피고 B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피고 C의 위 항변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어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희경

별지